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0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서삼석 · 임호선 · 박용갑
박수현 · 조계원 · 양부남
윤준병 · 이성윤 · 신정훈
장종태 · 이병진 · 전종덕
김영진 · 문금주 · 위성곤
소병훈 · 허 영 · 이강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과정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일례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해남 - 신장성 T/L 건설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하는 안에 그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를 통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읍·면·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 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하여”를 “대상지역의 읍·면·동 단위 별로 실시하여”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주민총회 등을 통한 직접 선정 방식으로 선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3. 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 중 전원개발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
4.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법인인 경

우에는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u>통하여</u>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 ----- ----- ----- ----- ----- <u>대상지역의 각 읍·면·동 단위</u> 별로 실시하여----- ----- ----- ----- ----- ----- ----- ----- ----- -----.
1. ~ 4. (생략) ②·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 ----- -----

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다음 각 호의 사람을-----

-----.

1.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근무하는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주민총회 등을 통한 직접 선정 방식으로 선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주민
3. 전원개발, 환경보호 또는 송전 및 변전 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가 중 전원개발

<u><신 설></u> ② ~ ⑤ (생 략)	<u>사업자가 위촉하는 사람</u> <u>4.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u> <u>선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법</u> <u>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을</u> <u>말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	---